

# 권리 안내: NYC 레스토랑 배달노동자



**이 통지는 제3자 음식 배달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.**  
여기에는 다른 사업체에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 Uber, Grubhub, DoorDash, Wonder, Relay, Fantuan, HungryPanda가 있습니다.



## 급여

- 앱은 준비 및/또는 배달에 투입된 시간에 대해 시간당 **\$22.13** 이상(팁 제외)을 지급해야 합니다. 이 최저 금액은 매년 **4월 1일**에 인상됩니다.
- 앱에서는 급여 인상 추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. 앱에서는 급여 계산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.
- 앱은 근로자가 얻는 모든 팁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앱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, 급여 수령 시 수수료 없음 옵션을 제공하고, 상세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앱은 배달 건별로 고객이 팁을 얼마나 지급했는지, 전날 총 급여와 팁 총액은 얼마인지 알려줘야 합니다.



## 방법

- 앱은 근로자가 배달을 수락하기 전에 경로 세부정보를 알려 줘야 합니다. 세부 정보에는 픽업 주소, 예상 시간과 거리, 팁, 급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
- 근로자가 이용하는 다리나 터널, 수령 장소와 최종 배달 지점 사이의 거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앱은 그 제한을 벗어나는 배달 건은 제안할 수 없습니다.



## 접근성

- 앱은 **6회 배달** 후에는 보온 음식 배달 가방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.
- 주문을 받을 때 사업장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

## 보복 금지

권리를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보복이 의심된다면 DCWP에 제보하십시오. DCWP는 절대로 근로자의 이민 신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.

## 민원 제기하기

권리가 침해되면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위반 신고는 소비자 근로자 보호부(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, DCWP)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.

- [nyc.gov/DeliveryApps](https://nyc.gov/DeliveryApps) 참조
- **311**(뉴욕시 밖에서는 212-NEW-YORK)으로 전화하여 “배달노동자”(Delivery Worker)를 찾으십시오.

DCWP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.

